

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서

어선명:

소재지:

어선소유자:

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을 명령하오니, 구체적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, 어선원 재해율이 감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개선항목
일반사항	
중점 개선사항	
그 밖의 사항	

※ 위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(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)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(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)을 알려드립니다.

 년 월 일

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

직인